

3. 담당변호사 제도

1. 인권조례안에 입안을 추진/ 도의회측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2. 제주도 변호사에 대한 의견수렴
 - 박석0 변호사 찬성
 - 이연0 변호사 찬성
 - 권0 변호사 찬성
 - 강봉0 변호사 찬성
 - 현재 방문계획 기간 중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 후 제주지방법자치회와 협의할 예정
3. 담당변호사제는 변호사분들의 자발적 지원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음.
4. 외국인이 주치의처럼 쉽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
 - 실효성을 위해 가구당 담당변호사제를 추진
 - 변호사분들의 동의 숫자의 증가에 따라 담당변호사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넓힘.
5. 변호사님들의 막연한 봉사의식에 기대는

부분으로는 부족

결국은 최소한 실비이상의 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현재 2010.9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보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지급(기본보수액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당 100만원 이상이 지급되므로 일년에 한분당 10건 정도의 사건을 맡게 된다고 가정하면, 1인당 1년에 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됨. 제주지방법원의 소송구조제도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님.

6. 만약 차후의 위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시행이 된다면 추진하는 거주외국인 담당변호사제가 기능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그러나 거주외국인 담당변호사제는 변호사분들의 자율적인 제도이고 지정변호사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제도인 점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

7. 법원 차원의 권위있고 재정적 바탕이 있는 제도와 그러한 권위가 전혀 없고 재정적 지원도 하나하나 따내야 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 검토/도의회와 조율

8. 인력적인 원조/ 제주대 로스쿨생의 상시적 실무수습 체계

9. 늘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에 대한 소송수행으로 법률지원의 질적 향상을 목표, 실질적인 내국인 이상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제주도의 친외국인정책과 국제화시책에 기여, 이를 통한 자발적인 변호사의 공익상 추구, 모범사례화.